중소기업 탄소중립 설비투자 지원 참여기업 모집 공고 (기초·고도화 트랙)

에너지 고효율 및 탄소저감 설비도입 지원을 통해 중소기업의 온실 가스 배출량을 감소하고 탄소 규제에 대한 대응력을 강화하고자 2025년도 「중소기업 탄소중립 설비투자 지원사업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은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> 2025년 2월 18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

1. 사업개요

- □ (사업목적) 에너지 고효율, 탄소저감 설비도입 지원을 통해 중소기업의온실가스 배출량 감소 및 탄소 규제에 대한 대응력 강화
- □ (사업기간) 공고일 ~ 2025년 10월 31일(금)까지
- □ 사업 추진체계

| 구 분 | 역 할 |
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|
| 총괄기관 (중소벤처기업부) | ・사업 기본계획 수립 ・사업공고 ・예산교부 |
| 시행기관 (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) | •총괄관리(기획, 운영, 관리, 정산 등) •정책연구 •성과분석 |
| 지원업체 | • 사업신청, 실시설계지원 협조, 사업비 정산 |
| (중소기업) | •실시설계 결과에 따른 공정개선 및 설비 도입 |
| 수행사 (실시설계지원 수행사) | •지원업체 컨설팅·설비 도입 지원 •지원업체 탄소감축량 실적 보고 |

□ 사업 추진절차

| 신청・접수 | | 평가・선정 | | 협약체결 | | 실시설계·설비도입 |
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|---|-----------|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|
| ESG·탄소중립 통합플랫폼 esg.kosmes.or.kr | \Rightarrow | 서류평가→현장점검 →대면평가 | 仓 | 시행기관·선정기업 | \Rightarrow | 수행기관 매칭 및 사업수행 |
| 2월 ~ 3월 | | 3월 ~ 5월 | | 5월 ~ 6월 | | ~ 10월 |

2. 지원내용

- □ 탄소중립 전략수립 및 최적 온실가스 감축설비 도출(실시·설계지원),→ 설비 도입을 패키지로 지워
 - (실시·설계 지원) 탄소중립 전략수립 및 최적 온실가스 감축설비 도출을 위한 기술·경영 컨설팅, 공정분석, 시장조사 등 지원
 - (설비도입 지원) 탄소배출 감축 설비 도입비용 일부 지원, 업체별 국고 보조금 상이(최대 3억원, 부가세 제외)
 - * 국고보조금 지원금액은 심의 등을 거쳐 확정됨

3. 지원대상

□ 지워자격

- 「중소기업기본법」제2조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「중소기업」
 - * 중소기업현황정보 시스템(sminfo.mss.go.kr)에서 중소기업 확인서 발급 및 필수제출
- 배출권거래제 할당기업, 온실가스·에너지 목표관리업체가 아닌 기업
 - * 국가온실가스 종합관리시스템(ngms.gir.go.kr)에서 등록현황 제공
 - 탄소국경세 도입 검토 국가에 수출하는 기업, 탄소多배출업종* 영위기업 등은 우대 지원 * 화학제조업, 비금속제조업, 1차금속제조업, 식료품제조업, 금속가공업 등 (**붙임2 참조**)

□ 신청 제외 대상

- ◈ 금융기관으로부터 불량거래처로 규제중인 기업
- * 단, 신용회복위원회의 프리워크아웃, 개인워크아웃 제도에서 채무조정합의서를 체결한 경우, 법원의 개인회생제도에서 변제계획인가를 받거나 파산면책 선고자, 회생인가를 받은 기업, 중진공 등으로부터 재창업자금을 지원받은 기업 등 정부·공공기관으로부터 재기지원 필요성을 인정받은 자(기업)는 참여 가능
- ◈ 국세 및 지방세 체납 기업 또는 대표자
- ◈ 부도 및 휴.폐업 기업
- ◈ 불건전 영상게임기 제조업, 도박게임장비 등 불건전 오락용품 제조업
- ◈ 중소기업 탄소중립 설비투자 지원 실시설계지원 수행사, 설비도입지원 수행사로 참여하고 있는 기업 또는 그 특수관계 기업
- ◈ 대표자 또는 기업이 보조금법 위반 등으로 정부 지원사업에 참여제한 중인 경우
- ◈ 대표자 또는 기업이 그 밖에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지원이 합당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

4. 지원규모 및 조건

- □ (지원예산) 9,700백만원 내외
- □ 지워내용
 - **(실시설계지원)** 감축실적보고서 · 완료보고서 · 변경사업계획서 작성지원 등 실시설계지원 수행사를 통해 10백만원 내 수행
 - **(설비도입지원)** 업체별 국고보조금 최대 3억원까지 지원(부가세 제외)
 - 세부 지원트랙(공급망 트랙은 별도 모집 예정)

| 지원트랙 | 지원(신청)대상 | | 규모 | 보조율 | 비고 |
|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|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|
| 기초 | · 지원자격을 충족하는 기업 | | 75개사 내외 | 50% 이내 | · 기초트랙, 고도화트랙 |
| 지원자격을 고도화 충족하는 기업 | · '22~'24년 동 사업 완료 및 정상 진행 기업 | | | 중복신청 불가 | |
| | | 족하는 참여하여 '중간1' 이상인 기업 | 5개사 내외 | 70% 이내 | · 최근 5년간 동일 트랙 內 |
| | 71日 | · Net-Zero Members(기술보증기금) | | | 3회 초과 지원 불가 |

- * 중소기업 스마트제조혁신 지원사업 중 세부사업명 '탄소중립형 스마트공장'에 해당
- **(사후관리)** 사업종료 후 5년간 탄소 감축실적 데이터* 및 보고서 제출
 - * 전력량계, FEMS 연동 등을 통한 데이터 제공 및 현장조사가 수반될 수 있음

5. 평가 절차

 \circ ① 신청서제출 \rightarrow ②서류심사 \rightarrow ③현장점검 \rightarrow ④선정심의(기업 PT)

| 구분 | 평가 항목 |
|----------|--|
| 서류심사 | · (사업계획) 사업계획 타당성, 자금조달계획 적정성, 사후관리·수행사 적성성 등 |
| | · (사업효과) 온실가스 감축량 및 감축률, 투자금 대비 감축효과 |
| | · (정책목적) 고탄소 배출업종 영위여부, 일자리 창출효과, 대기업·수출여부 |
| 현장점검 | · (경영자) 대표자 및 사업 책임자 확인, 사업계획서 내용 인지 여부 |
| | · (탄소저감) 실시설계지원 필요성, 설비도입지원 타당성, 공정개선 및 사후관리 가능여부 |
| | · (기업현황) 사업장 운영현황, 조직 및 고용수준, 시설수준 등 사업계획서 기재내용 점검 |
| 선정심의(PT) | ·(탄소저감) 탄소저감 계획 구체성, 사업계획 실현가능성, 감축목표 적정성 등 |
| | · (공정개선) 성과창출 계획 적정성, 도입 희망 설비 타당성, 공정개선 활동실적 |
| | · (파급효과) 모범사례 창출 및 확산 가능성, 탄소저감 시급성, 고용창출 등 기대효과 |

6. 사업 신청

□ 신청 기간 : 2. 18.(화) ~ 3. 10.(월) 16:00 까지

□ 신청 방법

○ (온라인 신청) ESG·탄소중립 통합플랫폼(esg.kosmes.or.kr)을 통해 신청

□ 사업설명회

- 본 사업에 대한 이해도 향상을 위해 설명회 실시 예정
- (온라인 설명회) 2.20.(목) 15:00
 - * ESG·탄소중립 통합플랫폼(esg.kosmes.or.kr)을 통해 설명회 전일 접속URL 공지

□ 문의처

○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제조혁신지원처 055-751-9771, 9849

7. 기타 안내사항

- 원활한 사후관리를 위해 선정기업은 지원설비에 적산전력계 등
 모니터링 설비를 필수로 설치해야 함
 - * 본 사업 지원으로 도입되는 기계설비의 모니터링 설비 구입비용은 기업 자부담
- 선정 후 실시설계 지원 단계에서 중도 포기할 경우 기업부담금 발생함
 - * 실시설계 진행 중 중도 포기 시 기업부담금: 60만원 / 실시설계 후 사업포기 시 기업부담금: 150만원
- 2천만원을 초과하는 물품 및 용역구매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국가 종합전자조달시스템(나라장터)를 이용하여 계약을 체결해야 함
- 입찰·계약의 전반에 관하여 국가계약법을 준용하여야 하며, 위반 시 지원사업의 참여가 제한될 수 있음

- 협약 체결 후 4개월 이내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(나라장터)를 통해 온실가스 감축설비 계약을 체결해야 하며 4개월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 사업포기로 간주함
- 온실가스 감축설비 계약 체결 후 1개월 이내 최소 30% 이상 선금 집행 필수(자부담금 30% 이상 납부 필요)
- 'CBAM 대응 인프라구축 사업'및 '기후공시·공급망 실사대응 기반구축 사업', '중진공 ESG 심층진단' 참여기업 대상으로 공급망 트랙^{*}을 신설 하여 '25년 5월 중 별도 공고 예정임
 - * (대상) CBAM 대응 인프라구축 사업 지원기업(24년 완료기업, '25년 선정기업), '25년 기후 공시·공급망 실사대응 기반구축 사업 선정기업, '23-'24년 중진공 ESG 심층진단 완료기업

붙임 1 지원대상 감축설비

| 지 원 설 비 | 지 원 범 위 |
|----------------------|--|
| 1. 차압터빈 시스템 | 차압 또는 폐압을 활용하여 전기 또는 동력을 발생하는 설비 - 스팀터빈발전, 차압구동 장치 등 |
| 2. 연료 전환 | 온실가스 저감을 위해 새로운 연료로 대체하는 설비 - 보일러, 건조설비, 버너, 로 등 |
| 3. 폐기물전처리장치 | 전처리장치를 설치하여 온실가스 감축이 가능한 설비 - 파쇄기, 선별기 등 |
| 4. 인버터 | 모터 회전수를 제어하여 동력을 절감하는 장치 - 고압스크류컴프레샤(인버터가 설치된 SCREW공기압축기를 활용하여 전력절감) - 저GWP 냉매를 사용하고 인버터에 의한 회전수 제어를 통해 전력을 절감하는 설비 등 |
| 5. 인버터 제어형 공기 압축기 | 인버터 운전을 통해 압축공기를 생산하여 전력을 절감하는 설비 |
| 6. 고효율 기기 | 효율 개선을 통해 온실가스를 감축하는 설비 - LED조명, 모터, Pump, Fan, 교반기, 변압기, 버너 등 - 마그네틱 커플링(펌프, 팬 등에 설치하여 모터의 동력절감) - IGBT 정류기(전기로 및 도금조 등의 에너지사용량 저감) |
| 7. 에너지관리시스템 | 온실가스 배출량에 대한 측정 및 관리를 위한 계측기, 제어장비, 모니터링 장비 등 시스템 구축 장치 |
| 8. 공정개선 | 공정을 개선하여 온실가스를 감축하는 설비 - 부생가스 회수 설비, 재생유 설비(폐기되는 고체 윤활유를 재사용) |
| 9. 탄소무배출설비 | 신재생에너지 설비 등 탄소무배출로 탄소중립에 기여할 수 있는 설비 - 신재생에너지: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를 생산 또는 이용하기 위한 설비 - 신에너지 시설: 수소보일러, 수소 정제 시설, 바이오가스 개질시설, 연료전지 등 - 재생에너지 시설: 태양에너지, 풍력, 바이오에너지 등 |
| 10. 폐열회수 이용설비 | 폐열을 회수하여 전기를 생산하거나 가열원 및 에너지원으로 활용하는 설비 - 건조배열, 보일러배열, 냉각열 등 |
| 11. 폐기물 열분해시설 | 폐플라스틱 등의 폐기물을 열분해하여 연료화(가스, 유류)하기 위한 설비 |
| 12. 탄소포집기술 | 온실가스를 포집·이용하는 설비 |
| 13. 기타 | 지원사업 신청을 통하여 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설비 |

※ 지원대상 감축설비 목록 외 지원여부는 운영위원회를 통해 결정되며, 서류심사 시 운영위원회도 동시에 진행되므로, 별도 신청절차 불필요

붙임 2 탄소多배출 지원우대업종

| 업종구분 | 산업분류코드 |
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|
| 화학 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(의약품 제외) | 20*** |
|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 | 23*** |
| 1차 금속 제조업 | 24*** |
| 금속 가공제품 제조업(기계 및 가구 제외) | 25*** |
| 식료품 제조업 | 10*** |
| 고무 및 플라스틱제품 제조업 | 22*** |
| 펄프, 종이 및 종이제품 제조업 | 17*** |
| 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 | 29*** |
|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| 30*** |
| 전자 부품, 컴퓨터, 영상,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 | 26*** |
| 전기장비제조업 | 28*** |
| 섬유제품 제조업(의복제외) | 13*** |

* 사업자등록증에 명기된 업종을 기준으로 하되, 그 내용이 명확하지 않거나 다수의 품목을 취급할 경우는 지난 3년간 매출액 중 주요 매출 품목(산업분류코드)을 기준으로 함